

#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롯데에너지마테리얼즈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LOTTE ENERGY MATERIALS CORPORATION" 라 표기한다.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해동박 제조판매업
2. AL 박 제조판매업
3. FCCL 제조판매업
4. 이차 전지 소재 원료 제조, 판매 및 관련 용역제공 등 부대사업
5. LED 제조판매업
6. 수출입업
7.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8. 부동산 임대업.
9. 주택, 상가, 빌딩 건설업 및 분양 임대업
10. 도시개발, 산지개발, 공장부지,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업
11. 토목건축공사업
12. 부동산 거래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업
13. 자금 중개업
14. 자원 개발 및 판매업
15. 공장의 공정, 정비, 운전 및 기타 기술 용역에 관한 사업
16. 유통, 도소매, 제조업
17. 전기전자부품업
18. 각종 목재 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
19.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2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판매, 임대 및 관련 용역사업

21.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및 기타 투자관련 사업
22.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공고방법)**

-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energymaterials.com](http://www.lotteenergymaterial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향의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타 일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 2 장 주식**

### **제 5 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 백만주로 한다.

### **제 6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 백만주로 한다.

### **제 7 조(1 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하고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배당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참가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제 3 항에 의하여 누적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이사회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제 9 조의 3(전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9 조의 4(상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 9 조의 2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 8 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효율적 관리 등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적 관련성이 있는 재산(주식 또는 지분증권 포함)을 현물출자 받기 위한 경우
7.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③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 2 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1 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9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리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 년 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03.3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2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13 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9.03.29.)

####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삭제 2025.01.24)
-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2(주주명부 작성, 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채

#### 제 17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전후방 연계시장의 확보,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 영업상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기타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전후방 연계시장의 확보,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 영업상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기타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03.31)
- 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9 조의 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 분의 5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제 19 조의 3(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0 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21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 22 조(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23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4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25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6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7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8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이 있다.

## **제 28 조의 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9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0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 32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이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제 33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0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4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1 년 이상 3 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 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 33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함께 한다.

### **제 36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제 37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8 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39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39 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으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0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40 조의 2(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투명경영위원회
  - 2. ESG 위원회
  - 3. 보상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 40 조, 제 41 조 및 제 4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1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2 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3 조(상담역 및 고문)**

(삭제 2025.01.24)

#### **제 6 장 감 사**

#### **제 44 조(감사의 수)**

회사는 1 인 이상 3 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 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 45 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6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7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사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38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49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 **제 50 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1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2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3 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 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 **제 54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4 조의 2(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의 정관의 규정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삭제 2021.03.31)

#### **제 55 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 56 조(규정 외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 **제 57 조(세부규정)**

당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제 58 조(시행)**

(삭제 2025.01.24)

부칙(2001년 5월 8일)

1. 이 정관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년 6월 1일)

1. 이 정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년 3월 28일)

1. 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3월 26일)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3월 23일)

1. 이 정관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3월 27일)

1. 이 정관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3월 23일)

1.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3월 17일)

1. 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3월 25일)

1. 이 정관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년 12월 16일)

1. 이 정관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10월 8일)

1. 이 정관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12월 22일)

1.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3월 30일)

1. 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3월 28일)

1.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3월 27일)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3월 25일)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3월 30일)

1.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 2, 제21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3월 25일)

1.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3월 31일)

1.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3월 14일)

1. 이 정관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LOTTE 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과 허재명 및 특수 관계인 2인 사이에 2022년 10월 11일 체결되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2023년 2월 9일 LOTTE BATTERY MATERIALS USA CORPORATION로부터 계약상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 받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종결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종결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3월 25일)

1.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년 1월 24일)

1.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 제 1항 및 제 19조 제 1항 개정내용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5년 3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 18조 제 1항 및 제 19조 제 1항 개정규정에 따른 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제 18조 제 1항 및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발행 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계산한다.